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12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김용민 · 박지원 · 김기표
최혁진 · 박찬대 · 황운하
민형배 · 박은정 · 권칠승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길밖에 없음. 이는 통상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3심급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업무 적체를 유발함.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통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사실관계 확정 및 개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문제는 일반 법원의 재판 절차로 일원화하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함.

이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

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
를 신설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고소인이나 고발인은”을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는”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친 피의자는 기소를 유예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최초로 하는 기소유예처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 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u>고 소인이나 고발인은</u>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 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 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u><신설></u>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 -----<u>고</u> <u>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는</u>--- ----- -----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2(기소유예처분에 관한</u> <u>행정소송)</u>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u>거친 피의자는</u> 기소를 유예하는 <u>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기각</u> <u>결정을</u>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u>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u> <u>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u> <u>수 있다.</u>